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목적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및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중주택 등 주택용도인 건축물 등은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로서, 정부 등이 주관한 설계공모에 당선 등 된 건축사는 역량 있는 건축사로 인정되어, 비록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건축물일지라도, 본인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직접 감리 수행이 가능. 하지만, 제도 도입후('16년~) 역량 있는 건축사가 감리하는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감리자 독립성 저하 등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등 문제 발생. 이에 10년간 인정하던 당선 경력을 5년간으로 단축하고 현재는 당선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역량있는 건축사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가능하던 부분을 당선 건축물 용도와 동일한 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만 예외 가능하도록 범위 조정 필요

3. 주요내용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등에서 주최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인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수상 인정 기간 단축과 건축물 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축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7항 중 “10년간”을 “5년간”으로, “당선되거”를 “감리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같은 용도(별표1 각호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대하여 당선되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 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 ⑥ (생 략)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 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 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u>10년간</u> 「건축서비 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u>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u> <u>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u> <u>를 말한다.</u>	⑦ ----- ----- ----- ----- ----- <u>5년간</u> ----- ----- ----- ----- <u>감리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같은</u> <u>용도(별표1 각호를 말한다)의 건</u> <u>축물에 대하여 당선되거-----</u>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754